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656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7. 13.
- 라. 회부일자: 2020. 7. 14.

2. 제 안 사 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함
(안 제8조제2항제5호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 번	인권영향평가				권고사유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조항	
1	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	소외계층 우범지역	취약계층 취약지역	14	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 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“소외계층”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“취약계층”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음.